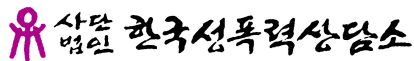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3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 홀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3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 홀

사회: **이유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변호사)

15:00	인사말	
15:10	발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이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5:40	토론	
	스토킹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처벌 법제화의 전략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 나라의 스토킹 관련 법률안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도입에 대한 방향 제시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여성 대상 폭력으로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안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조치의 필요성	이은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CONTENTS
차례

발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01
------------------------------	----

토론

스토킹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처벌 법제화의 전략	33
우리 나라의 스톱킹 관련 법률안	45
‘스토킹처벌법’ 도입에 대한 방향 제시	54
여성 대상 폭력으로서의 스톱킹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안	59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조치의 필요성	62

발제문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I. 들어가며

지난 3월 전(前)데이트 관계였던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톱킹 피해에 시달리다가 살해된 여성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충격적’²⁾이라 표현되는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스톱킹 피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스톱킹 피해의 심각성이 가시화되는 상황은 그동안 스톱킹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8만원의 범칙금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여겨왔던 우리 사회의 스톱킹에 대한 무관심과 안이한 대처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살인이라는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이미 수많은 괴롭힘과 위협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 때에 반복적인 스톱킹 과정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라면 살인과 같은 극단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예견된 결과(미래)’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 중단을 위해 철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스톱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스톱킹 행위를 규제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피해 중단을 위한 인식과 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난 3년간의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서 스

1) 본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최근 3년(2011.1.1-2013.12.31)간의 스톱킹피해상담일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 해당 사건에 대해 초기 보도한 2014년 3월 11일자 기사들만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명문대생’의 ‘충격적’인 사건이란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의외의 가해자’라는 뉘앙스를 내포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보도 관점이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의외성이 주는 충격에 놀란 사건’으로 보도되는 것은 스톱킹을 포함한 성폭력 전반의 가해자에 대해 ‘사회 부적응자, 나오는 상관없는 타인 혹은 정신병자 등’으로 분리하는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성폭력 문제를 타자화하는 인식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

토킹 피해 경험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토킹을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을 세밀하게 드러내려 한다. 이를 토대로 왜 스토킹이 경범죄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고려하여 스토킹의 특수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법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³⁾ 또한 법과 함께 변화되어야 할,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모색해보았다.

그러나 효과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려 스토킹 법안이 줄속으로 통과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아동 성폭력 사건이 이슈화 될 때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속성으로 개정된 강경처벌정책이 성폭력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이미 경험해온 바이다. 따라서 스토킹 관련법이 절실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II. 상담 통계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현실

1. 분석 개요

분석 대상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⁴⁾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상담 일지 중 스토킹 사례이다. 총 240명(건)의 피해자와 436회의 상담으로 전화⁵⁾ 혹은 상담소 내방을 통한 면접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스토킹상담 일지에서 드러나는 상담사례의 건수와 빈도에 대해 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일지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분석했다.

스토킹으로 분석한 사례는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지하고 호소한 사례 외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일방적 구애, 헤어짐에 대한 보복, 뚜렷한 이유 없는 일상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스토킹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지만 본래 시작이 스토킹으로부터 이어졌다고 본 사례도 포함되었다.

3)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의 스토킹 관련 방지 혹은 처벌법에 대한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스토킹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4) 2013년 9월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제언하기로 하고, 스토킹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동의 분석틀의 초안을 만들고,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분석틀을 토대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5) 단회 전화상담으로 그친 경우 상세한 피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스토킹 상담일지 분석들은 아래와 같다.

[스토킹 상담일지 분석들]

분류	내용	중복파악 여부
1	연도별 상담 건수 및 횟수 현황	
2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3	피해자, 가해자 연령별 상담현황	
4	피해자, 가해자 성별 상담현황	
5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6	-1 스토킹과 여타 성폭력 피해 중복 발생 여부	
	-2 스토킹과 여타 성폭력 피해 중복 발생 현황	중복파악
7	스토킹 피해 지속기간	
8	스토킹 가해 방법 및 수단	중복파악
9	스토킹 가해 목적	중복파악
10	상담 시 내담자 호소 내용	중복파악
11	상담 과정 중 대응여부 및 결과	중복파악

상담일지 분석에 있어 스토킹 가해 방법 및 수단, 스토킹 가해 목적, 상담 시 내담자 호소 내용, 상담 과정 중 대응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스토킹 피해 양상과 다양한 피해자의 문의 및 호소 내용을 드러내기 위하여 중복 파악했다.

2 분석 결과

1) 연도별 상담 건수 및 횟수

표1. 연도별 스토킹 상담 건수⁶⁾ 및 횟수⁷⁾ 현황

(단위: 건수/횟수)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상담 건수	60(25.0%)	92(38.3%)	88(36.7%)	240(100%)
상담 횟수	93(21.3%)	204(46.8%)	139(31.9%)	436(100%)

6) 건수: 상담소에 의뢰된 성폭력 사건(내담자)의 수(명)

7) 횟수: 한 사건(내담자)에 대해 연속 상담의 진행 횟수가 포함된 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스토킹 피해에 대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240명의 내담자와 436회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240명의 내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가 포함되어 상담횟수로는 총 436회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2) 상담 의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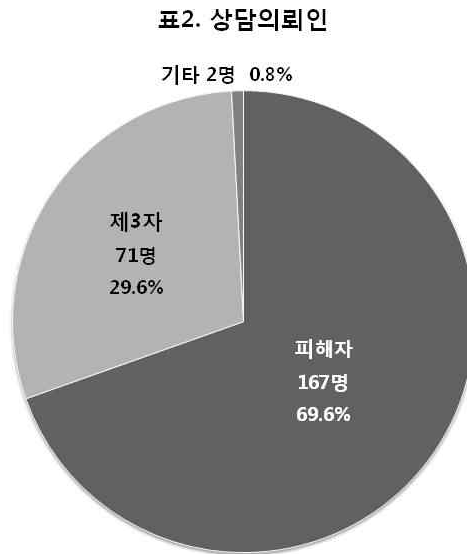


표 2 상담 의뢰인
(단위: 건수)

피해자	제 3자	기타	합계
167(69.6%)	71(29.6%)	2(0.8%)	240(100%)

상담 사례 중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167건(69.6%)이고, 제3자⁸⁾가 상담을 한 건수는 71건(29.6%)에 해당하였다. 기타에 해당하는 2건(0.8%)은 가해자 가족이 상담을 요청한 건으로, 가해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건이었다.

8) 피해자 본인을 제외한 피해자의 친족, 친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제3자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3) 피해자 • 가해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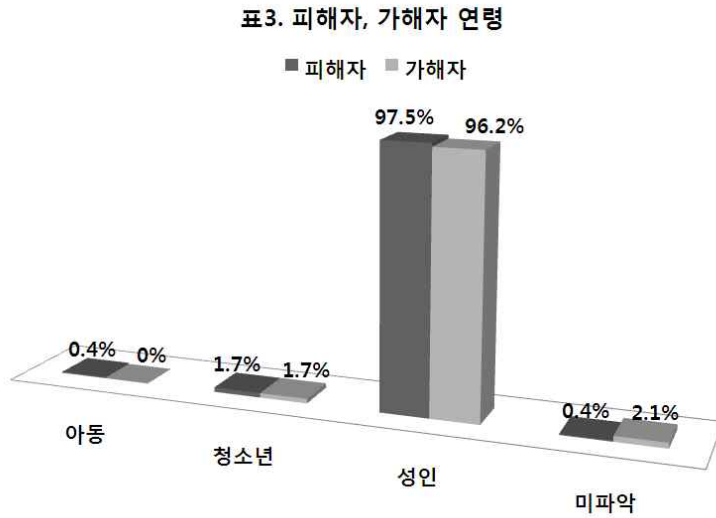


표 3. 피해자•가해자 연령
(단위: 건수)

	아동 (13세 미만)	청소년 (14세-19세)	성인 (20세 이상)	미파악	합계
피해자	1(0.4%)	4(1.7%)	234(97.5%)	1(0.4%)	240(100%)
가해자	0(0%)	4(1.7%)	231(96.2%)	5(2.1%)	240(100%)

피해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의 성인이 234건(9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해자의 연령 또한 20세 이상의 성인이 231건(9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톡킹은 성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인 아동 피해자에 대한 스톡킹 가해자는 친족으로, 성인이었다.

4) 피해자 • 가해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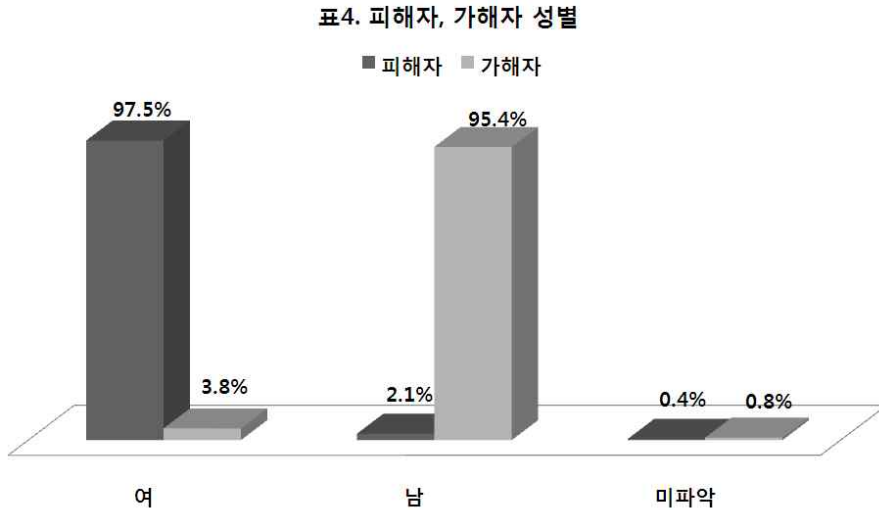


표 4 피해자·가해자 성별
(단위: 건수)

	여	남	미파악	합계
피해자	234(97.5%)	5(2.1%)	1(0.4%)	240(100%)
가해자	9(3.8%)	229(95.4%)	2(0.8%)	240(100%)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234건(9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성 피해자의 사례도 5건(2.1%)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229건(95.4%)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가해자도 9건(3.8%)이 존재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여성인 사례가 있었으나, 남성피해자-남성가해자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상담사례 중 절대 다수의 경우에서 여성 피해자-남성 가해자의 구도로 스토킹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피해자 • 가해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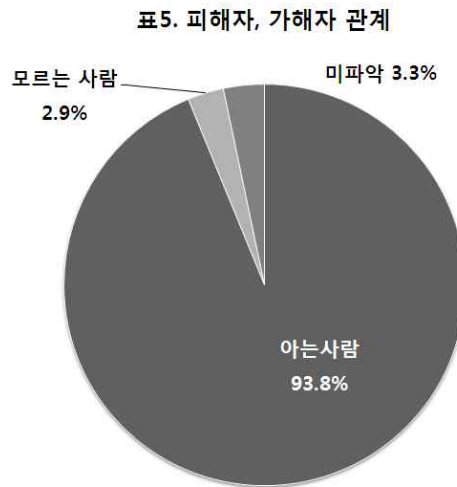


표 5. 피해자 • 가해자 관계
(단위: 건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파악	합계
225(93.8%)	7(2.9%)	8(3.3%)	240(100%)

<표 5.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토킹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25건(93.8%)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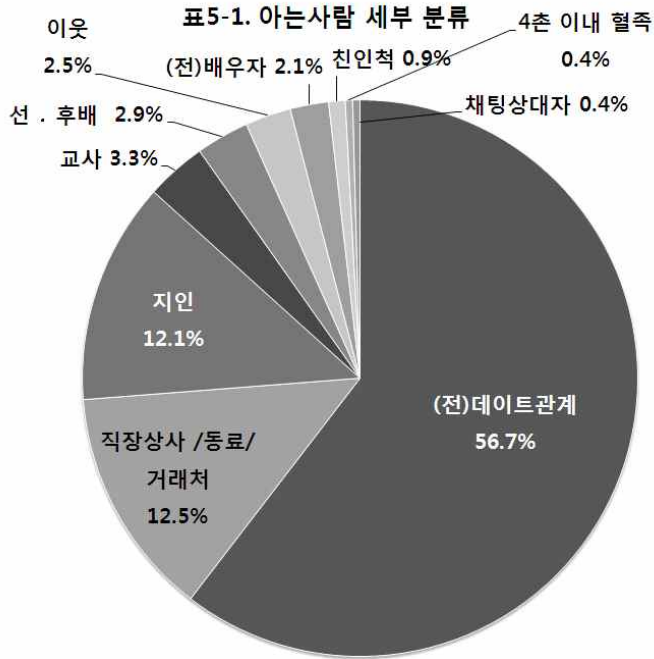


표 5-1. 아는 사람 세부 분류
(단위: 건수)

아는 사람	(전)데이트관계	136(56.7%)	225(93.8%)
	직장상사 . 동료 . 거래처	30(12.5%)	
	지인(친구, 지인의 지인, 주변인의 지인)	29(12.1%)	
	교사(강사)	8(3.3%)	
	선 . 후배	7(2.9%)	
	이웃	6(2.5%)	
	(전)배우자	5(2.1%)	
	4촌 이내 혈족 외 친인척	2(0.9%)	
	4촌 이내 혈족	1(0.4%)	
	채팅상대자(인터넷)	1(0.4%)	

세부 분류로는 (전)데이트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36건(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상사·동료·거래처 등 업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 친구를 포함한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도 각 30건(12.5%), 29건(12.1%)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통계 결과를 통해 스토킹이 친밀한 관계, 특히 데이트 관계로부터 다수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6) 스톡킹과 여타 성폭력 피해 중복 발생 여부(중복피해)

표6-1. 스톡킹과 성폭력 피해 중복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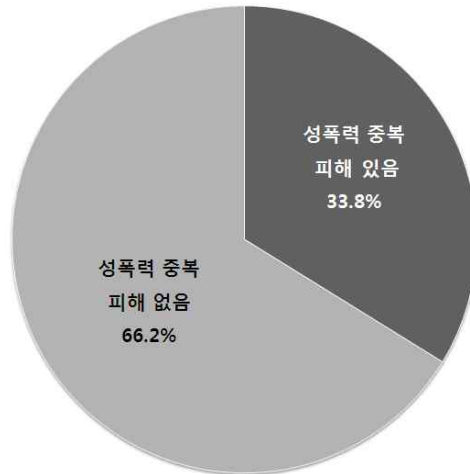


표 6-1. 스톡킹과 여타 성폭력 피해 중복 발생 여부
(단위: 건수)

성폭력 중복 피해 있음	성폭력 중복 피해 없음	합계
81(33.8%)	159(66.2%)	240(100%)

스톡킹 피해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한 경우가 81건(33.8%)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중복 피해가 없는 건이 159건 (66.2%)이었다.

표6-2.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 중복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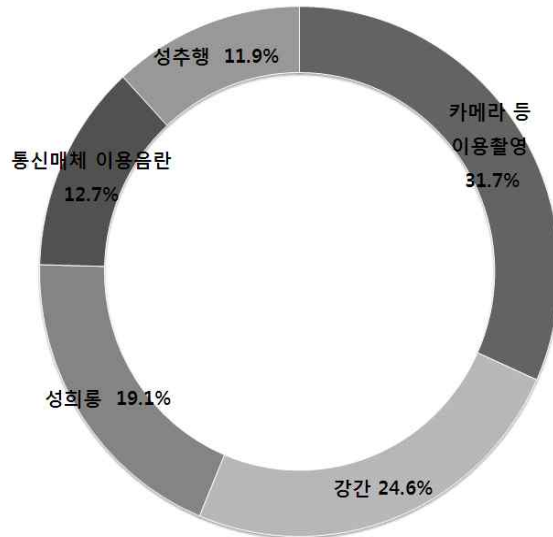


표 6-2 스토킹과 여타 성폭력 피해 중복 발생 현황
(단위: 횟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성희롱	통신매체 및 사이버매체	성추행	합계
40(31.7%)	31(24.6%)	24(19.1%)	16(12.7%)	15(11.9%)	126(100%)

성폭력 중복 피해 발생 현황은 <표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81명이 총 126건의 성폭력 중복 피해를 입었으며 81명중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도 31명이나 되어 성폭력 중복 피해의 실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40건(31.7%)으로 가장 많았는데, 친밀한 관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이 관계가 단절된 이후 협박의 수단이 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그 다음으로 강간이 31건(24.6%), 성희롱이 24건(19.1%), 통신매체 및 사이버매체(전화,인터넷) 이용 음란 16건(12.7%), 성추행이 15건(11.9%)순이었다. 이때 성희롱은 직접적으로 성관계에 대해 제안한 건을 포함한다.

7) 스톡킹 피해 지속기간

표7. 스톡킹 피해 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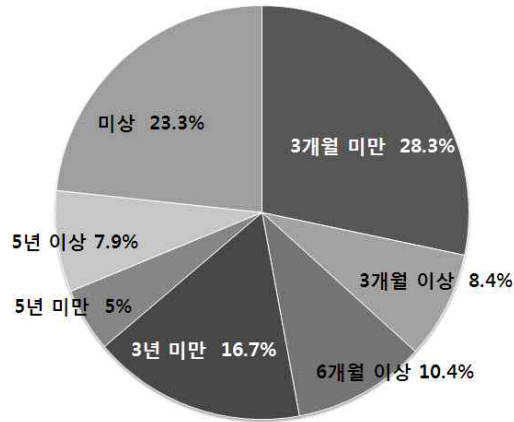


표 7. 스톡킹 피해 지속기간
(단위: 건수)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미상	합계
68 (28.3%)	20 (8.4%)	25 (10.4%)	40 (16.7%)	12 (5.0%)	19 (7.9%)	56 (23.3%)	240 (100%)

<표 7>을 보면 스톡킹 피해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68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년 미만에 이르는 피해가 40건(16.7%)으로 많았다. 5년 이상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스톡킹 피해를 입는 경우도 19건(7.9%)나 되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는 장기간의 피해가 높은 비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3개월 미만의 피해 지속기간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상담 시 피해자들은 실제 스톡킹이 시작된 시기, 자신이 스톡킹 피해로 인지한 시기,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는 시기에 따라 피해기간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위 결과로 드러난 피해 지속기간을 실제 스톡킹의 지속기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성적 괴롭힘을 못 견뎌 상담을 했다는 호소가 많았으며, 이를 토대로 이전에는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수위의 스톡킹이 이뤄지다가 3개월 안에 심

각한 수위의 스톡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년 이상 5년 미만 피해가 52건(21.7%)을 차지하였고, 5년 이상의 장기간 피해도 19건(7.9%)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간별 건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스톡킹이 초기에 중단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8) 스톡킹 가해 방법 및 수단 (중복과약)

표8-1. 스톡킹 가해방법 및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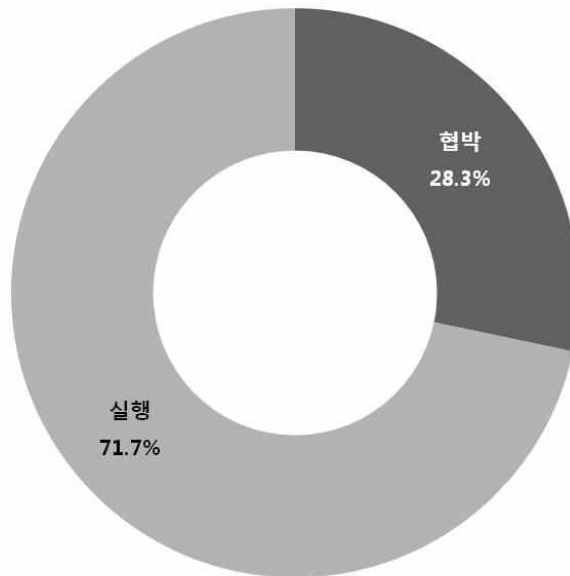


표 8-1. 스톡킹 가해 방법 및 수단 (중복 파악)
(단위: 건수)

협박	소문 유포	52(8.7%)	169 (28.3%)
	폭력	49(8.2%)	
	사진 및 동영상 유포	39(6.5%)	
	기타	29(4.9%)	
실행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207(34.6%)	429 (71.7%)
	불시 침입 및 배회	105(17.6%)	
	피해자에게 상해 입힘	51(8.5%)	
	소문 유포	11(1.8%)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8(1.3%)	
	가해자 스스로 상해 입힘	7(1.2%)	
	기타	40(6.7%)	
합계		598(100%)	

스톡킹 가해 방법 및 수단은 협박에 그친 사례와 침입, 상해 등 구체 실행까지 이어진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협박과 실행을 통틀어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⁹⁾이 240명 중 207명(86.3%)이 경험한 피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통신 및 사이버매체를 수단으로 삼아, 내용상 협박에 해당하는 괴롭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협박을 내용상으로 나누어 볼 때, 소문 유포 협박, 폭력 협박, 사진 및 동영상 유포 협박, 기타 협박의 4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실행을 내용상으로 나누면, 크게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 침입 및 배회, 피해자에게 상해 입힘, 소문 유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해자 스스로 상해 입힘 등의 7가지 경향으로 볼 수 있다.

9) 전화, 문자, 온라인 계정 등을 수단으로 함

표8-2. 스토킹 가해 방법 및 수단 중 협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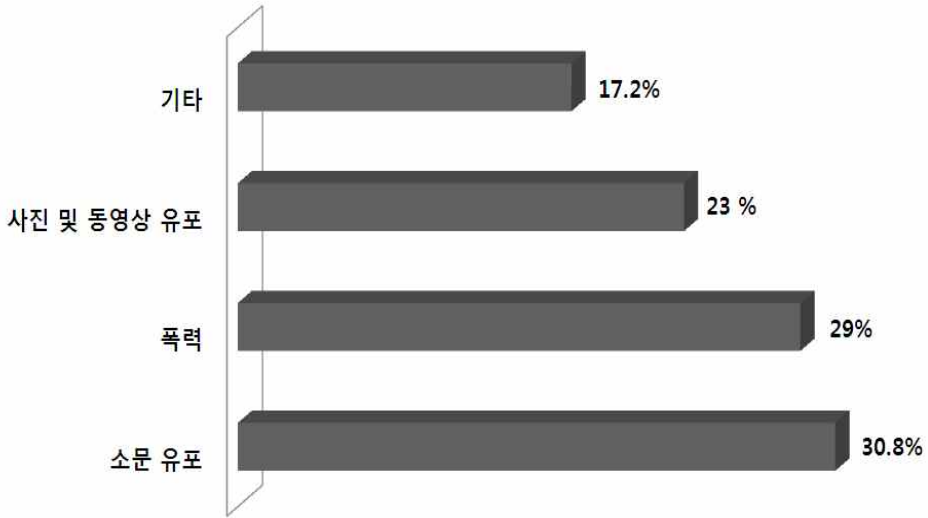


표 8-2 스토킹 가해 방법 및 수단 중 협박 (중복과외)
(단위: 건수)

협박	소문 유포	52(30.8%)	169 (100%)
	폭력	49(29.0%)	
	사진 및 동영상 유포	39(23.0%)	
	기타	29(17.2%)	

<표 8-2>에 따르면, 협박에 그친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소문 유포 협박¹⁰⁾으로 52건(30.8%)에 달했다. 폭력 협박¹¹⁾이 49건(29.0%), 사진 및 동영상 유포 협박¹²⁾ 39건 (23.0%), 기타¹³⁾ 29건(17.2%)으로 나타났다.

10) 피해자 가족(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직장, 불특정 대상으로 성관계 또는 성폭력 피해 사실 및 소문 유포하겠다고 협박
 11) 자해·자살 협박, 위해·살해 협박,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해 협박, ‘같이 죽자’, 자살요구
 12) 현재 테이트 상대나 직장, 인터넷 등에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몰래카메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13) 자녀 등 피해자 가족에 대한 괴롭힘, 성매매, 폭행, 간통, 성희롱, 인공임신중절 등의 타 혐의로 인한 억고소 사례

표8-3. 스톡킹 가해 방법 및 수단 중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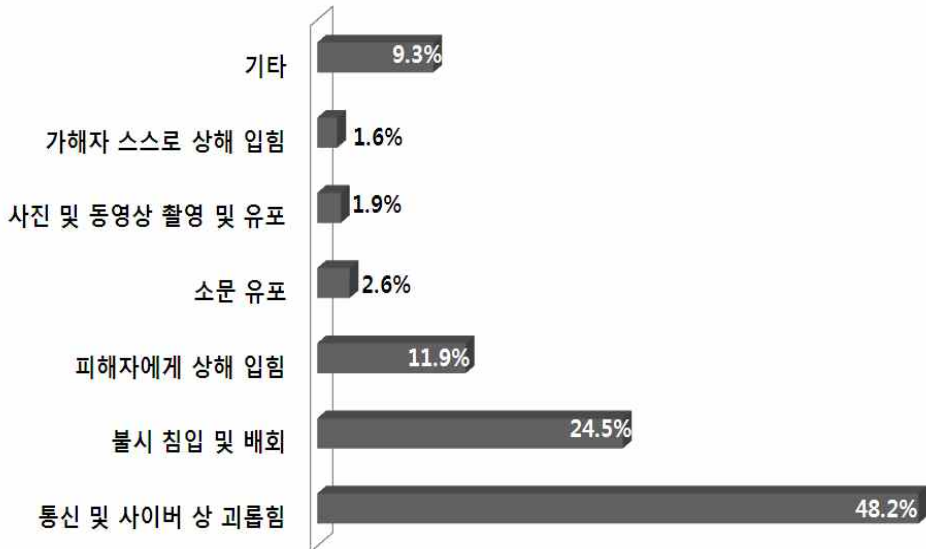


표 8-3. 스톡킹 가해 방법 및 수단 중 실행

(단위: 건수)

실행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전화, 문자, 온라인 계정 등)	207(48.2%)	429 (100%)
	불시 침입 및 배회	105(24.5%)	
	피해자에게 상해 입힘	51(11.9%)	
	소문유포	11(2.6%)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8(1.9%)	
	가해자 스스로 상해 입힘	7(1.6%)	
	기타	40(9.3%)	

스톡킹 가해 방법 및 수단의 구체 실행을 <표 8-3>를 통해 살펴보면 통신 및 사이버상 괴롭힘이 207건(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불시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지역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가 105건(24.5%)로 많았다. 직접적인 상해나 살인미수, 감금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도 51건(11.9%)을 차지하였고, 소문 유포가 11건(2.6%),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가 8건 (1.9%), 가해자가 스스로 상해를 입힌 경우도 7건 (1.6%)이 있었다. 기타 실행 또한 40건 (9.3%)으로 드러났다. 기타 사례 중에는 피해자의 개인 은행 계좌에 수천만의 현금을 이체하거나, 제 3자를 통해 강간을 교사

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했다. 이와 같이 구체 실행의 사례에서 가해자가 멀리서 쳐다본다거나, 거액의 현금을 이체하는 등의 사례 등, 현행법 상으로는 피해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9) 스토킹 가해 목적 (중복과약)

표9. 스토킹 가해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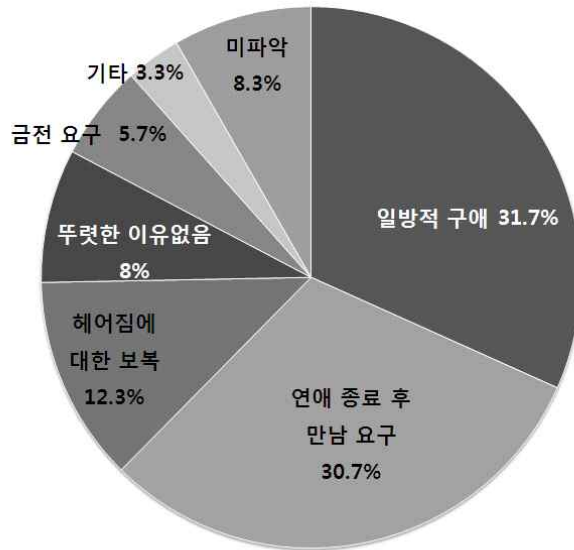


표 9. 스토킹 가해 목적 (중복 과약)
(단위: 건수)

일방적 구매	연애 종료 후 만남 요구	헤어짐에 대한 보복	뚜렷한 이유 없음	금전 요구	기타	미파악	합계
95 (31.7%)	92 (30.7%)	37 (12.3%)	24 (8.0%)	17 (5.7%)	10 (3.3%)	25 (8.3%)	300 (100%)

<표 9>에 보면 스토킹 가해목적은 일방적 구매가 95건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애 종료 후 만남 요구가 92건 (30.7%)으로 높았다. 헤어짐에 대한 보복도 37건 (12.3%)에 해당했고, 뚜렷한 이유 없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24건 (8.0%)나 되었다.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17건 (5.7%)이 있었다.

이중 일방적 구매, 연애 종료 후 만남 요구, 헤어짐에 대한 보복 등 일방적인 연애감정에

서 비롯된 것이 224건으로, 74.7%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애 종료 후 만남 요구, 헤어짐에 대한 보복은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었던 경우이다.

일방적 구애, 연애 종료 후 만남 요구, 헤어짐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가해를 묶어 보면,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일방적 욕구, 혹은 친밀한 관계로 진전되고자 하는 일방적인 욕구가 스토킹 가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찰과 함께 가해 목적에 있어 '뚜렷한 이유 없음'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스토킹이 연애 감정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10) 상담 과정 중 대응여부 및 결과 (중복파악)

표10. 상담과정 중 대응여부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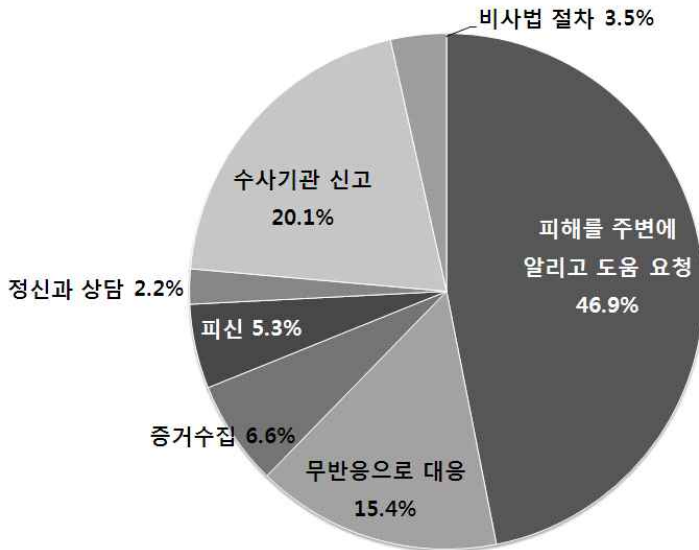


표 10. 상담 과정 중 대응여부 및 결과
(단위: 건수)

비제도적 대응	피해를 주변에 알리고 도움 요청	107(46.9%)	175(76.4%)
	무반응으로 대응	35(15.4%)	
	증거수집	15(6.6%)	
	직장을 그만두거나 피신함	12(5.3%)	

	정신과 상담	5(2.2%)	
제도적 대응	수사기관 신고	46(20.1%)	53(23.6%)
	비사법절차/ 조직내부 구제절차	8(3.5%)	
합계		228(100%)	

전체 상담 중 대응을 취한 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비제도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175건 (76.4%)에 해당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53건 (23.6%)에 달했다.

비제도적 대응에 있어서는 피해를 주변에 알리고 도움 요청, 무반응으로 대응, 증거 수집, 직장을 그만두거나 피신함, 정신과 상담 정도로 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을 분류해볼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신고와 조직내부 구제절차/비사법절차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비제도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스톱킹 피해를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107건 (46.9%)으로 높았다. 무반응으로 대응¹⁴⁾ 35건(15.4%), 증거수집¹⁵⁾ 15건(6.6%), 가해자를 피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신 12건 (5.3%), 정신과 상담 5건 (2.2%)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대응으로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가 46건 (20.1%)으로 가장 많고, 조직내부 구제 절차, 비사법절차를 통해 대응한 경우가 8건(3.5%)이다.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경찰에 문의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또한 조직내부 구제 절차, 비사법절차를 통해 대응한 경우는 가해자가 같은 공동체에 소속된 경우 직장이나 노동조합, 학교 등 조직 내부 구제 절차 등을 통해 대응을 한 경우였다.

상담 과정 중 대응 여부를 보면 상당부분 비제도적인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며, 현실적으로 스톱킹 가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많지 않고 가해를 중지시킬 만한 효과적인 수단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14)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설정하여 차단하는 등,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톱킹 피해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방식의 대응

15)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각서를 작성하거나 가해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두는 등 이후 대응을 위해 증거를 수집함.

III. 상담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현실

1. 범칙금 8만원, 경범죄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1) 8만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사례1) 8만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스토킹 피해

소개팅 한 남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직장과 집 앞을 배회하고 꽃과 선물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따라다님. 한 번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는 벌금 8만원만 냈을 뿐, 스토킹은 지속됨. 신고를 해도 지속되는 상황에 두려움을 호소.

사례1)과 같이 스토킹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경범죄로 8만원이라는 범칙금만을 부과하는 매우 경미한 수준의 처벌 조항만을 두고 있다. 경범죄로는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가해 행위는 중단되지 않으며 경고 조치 혹은 제재 수단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¹⁶⁾ 스토킹에 대한 실질적 처벌 조항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경범죄로 범칙금을 낸 스토킹 가해자에게 ‘가벼운’ 범죄 행위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시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게끔 학습하는 경향이 될 수 있기에 더욱 문제적인 상황이다.

사례2) 반복되고 지속될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피해

가해자는 전 직장의 사장으로 수년 동안 전화를 하고 음란 문자를 일주일에 100개 이상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함. 처음에는 주로 좋아한다는 문자를 보내다가 최근에는 온갖 욕설과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돌변함.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태도에 공포를 느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의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어 112에 신고를 하니, 문자를 복사해 오면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음. 피해자는 “원룸에 혼자 사는데 현관 문소리만 나도 어쩔 줄 모르겠고 집밖에도 못 나가겠다”며 두려움을 호소.

사례2)는 피해자의 안전하고 일상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집이 가해자의 계속되는 문자 협박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피해자가 겪는 피해는 원치 않는 문자가 전부인 듯 보인다. 하지만 그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었고 점차 내용 수위가 강해지고 있기에 공포가 커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벌금형’ 처리로는,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고용관계였

16) 2013년 3월 신설된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처벌조항(3조1항제41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해 기다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던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욕설과 성적 제안의 수위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지내야 할 수밖에 없다.

사례3)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필요

헤어지려 하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며 스토킹을 시작함. 수년 동안 스토킹 가해를 지속하며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거나 집에 침입하고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괴롭힘의 강도가 점차 심해져 납치와 강간피해가 발생함.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요함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고 얹히지 않으면 좋겠다”고 호소함. 가해자는 “신고 할 테면 해보라”며 “겁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협박함.

사례3)은 피해가 장기화되며 악화된 사례이다. 피해자는 장기적인 피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주저하였다. 지속된 피해 속에 공포가 심해진 경우에는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신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경범죄로 솜방망이식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기만 할 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물리적 해를 입기 전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와 같이 납치와 강간 피해에 대해서 법적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이는 단회의 피해에 대한 조치일 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권리 회복이 될 순 수 없다. 현행 법체계상에서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여 가시화되기 전에는 스토킹 피해에 대한 구제도, 가해에 대한 규제도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피해에 대응하기란 힘든 현실이다.

2) 증거부족으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

사례4) ‘입증’ 앞에 힘을 잃는 피해 경험

선배였던 가해자가 10년 이상 피해자의 학교 및 집근처를 배회하고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지속적으로 유포함. 학교를 다른 곳으로 진학했음에도 피해자의 학교에 자주 나타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침묵하다가 끊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거는 상황.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증거가 없어서 신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피해자는 “차라리 때리기라도 하면 좋는데”라며 스토킹 상황에 대한 힘듦을 호소.

위 사례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 사례로 10년 이상 지속되며 경험해야 했던 피해에 대해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신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피해자는 차라리 물리적 피해로 증거가 생겨 피해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피해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 대응력을 잃게 하는 경험이 된 것이다. 스토킹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피해 사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전화, 문자, 주변 배회 등 단회의 상황만 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위의 상황으로 간주될 만한 일련의 행위들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일상의 침해 정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스토킹의 특수성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에 피해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처벌 규정이 없어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사례5)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해자

데이트 당시 가해자의 폭력과 성폭력이 매우 심하여 헤어짐을 통보한 이후로 10년 이상 만남을 강요하며 스토킹, 협박, 상해, 납치 등 지속적으로 매우 극심한 스토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담을 한 것을 계기로 용기를 얻어 가족에게 피해를 알려 가족들의 경고로 스토킹 피해가 중단 됨. 그러나 얼마 전 이사를 하고 며칠 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가해자가 이사한 집 앞에 나타나 가만히 서서 피해자를 지켜 본 다음 차를 타고 간 일이 있었음.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등장만으로도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져 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함. 그러나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더욱 불안함을 호소

장기간 이어진 피해로 수차례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노출된 사례5)의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갑자기 나타난 가해자의 존재만으로도 이전의 피해 상황을 연상하며 공포 상황에 놓였다. 경찰은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지만, 가해자의 '가만히 서 있기'는 피해자에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폭력성이 체화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재'등장 자체가 이전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위험신호이자 끝났다고 생각했던 스토킹의 연장을 알리는 실체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10년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변을 배회하는 것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주요한 행위이다.

현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려 개인적으로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관할 지구대의 긴급 연락처를 받아 두는 정도이다. 즉 10년 이상 겪어온 스토킹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홀로, 개인적인 대응을 취하면서 고군분투하며 견뎌낼 수밖에 없다.

2 성폭력 ‘피해’가 스토킹의 수단이 되는 현실

1) 협박의 수단이 된 성폭력 피해

사례6) 스토킹의 무기가 된 성폭력 피해

직장 상사에 의한 강간 피해로 인해 임신중절을 함. 만나주지 않으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스토킹.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 두고 피신하였으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연락을 하여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 “절대로 강간 피해가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협박이 두려움을 호소.

사례6)의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 두며 피신하였지만 협박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은 여전하다. 이는 강간 피해 경험을 알릴 수 없는 피해자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가해자가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를 알릴 수 없었던 것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바라보는 왜곡된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아직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말하면 피해자 손해”라는 부정적 메시지가 여전히 공고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해를 알렸을 때 그 자체가 피해가 되는, 2차 피해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여타 성폭력 상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말할 수 없음’은 성폭력 피해를 ‘인권 침해’가 아니라 ‘여성의 정조 혹은 순결의 상실’로 바라보는 사회의 왜곡된 통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인 성규범과 이중 잣대 속에서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드러낸다.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스토킹의 협박 수단을 무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대응책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스토킹 피해를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버거운 상황이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사례7) 협박의 수단이 된 ‘낙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피해자가 임신중절을 하려고 하자 동의하지 않고 낙태를 하면 고소하고 죽이겠다고 결혼과 출산을 종용하며 스토킹. 피해자는 “처벌이 될까봐 어떻게든 가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임신 중절을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고통을 호소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정말 ‘낙태’가 불법이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인지... 겁이 난다”며 위법성 여부를 문의함.

위의 사례는 ‘낙태’ 처벌 정국 속에 결혼과 출산을 종용하거나 데이트 중 합의하여 ‘낙태’를 한 경우에도 헤어짐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금전을 요구하며 괴롭

히는 스토킹 현실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타격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 여성만 고발 가능한 현실에 압담함을 느끼게 된다. 해당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상담의 공통점은 '낙태를 스토킹의 빌미로 삼는 파렴치함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피해를 알리는 것이 또 다른 피해가 되게끔 작동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례8) 동영상 및 사진 유포 가능성의 두려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었다며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해자가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했으나 '확인시켜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함. 피해자는 동영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포의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이 증폭됐음을 호소.

사례8)은 몰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촬영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피해자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그러나 불안감에 흔들리지 않고 가해자와의 심리전에 대응하며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협박하며 경고하는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를 포함하여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토킹 피해 대처의 시작은 스토킹 피해를 인지하는 것으로 스토킹 피해가 혼자 겪는 것이 아니며, 현실을 알리기 위해 보다 많은 대응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2) 왜곡된 성폭력 통념이 작동하는 스토킹 피해

사례9)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현실

유부남이란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지려고 하자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며 수년 이상 스토킹함. 욕설 문자를 하루 100건 이상 보내고 2-3일에 한 번씩 집과 직장을 찾아오는 스토킹을 지속함. "모르고 만났지만 유부남을 만난 것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했기에 피해를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음을 호소함.

사례9)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유부남을 만났었다는 사실이 자책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알리지 못한 채 장기간 지속된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상담과정에서도 여전히 위축감을 해소하기 힘들어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행동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차별적인 성문화가 내면화된 결과로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서 찾기보다 피해자의 문제로 바라보는 피해자 유발론적 시각 관점이 작동한 것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의 대응을 저해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메시지는 피해자 비난이 주를 이룬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냐,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 너도 똑같은 사람이겠지 뭐” 등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왜곡된 사회적 인식은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의 무게만큼 버거운 일이다.

사례10)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

헤어지자고하자 몇 년 째 만남과 동거를 요구하며 괴롭히는 상황. 언어폭력,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협박, 칼로 위협 및 상해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알려줬다는 협박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스토킹을 지속함. 피해자는 “아이들이 알면 나를 부정한 엄마로 오해할까봐”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해 혼자 해결해보고자 했으나 피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몇 년 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피해를 자녀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책을 마련함.

사례10)의 피해자는 ‘피해를 알려줬다는 가해자의 협박 수단을 무화시키고 스토킹 피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다.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가 되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알면 자신을 부정한 엄마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하고 고민하며 자책하고 내면화한 두려움이 매우 컸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자녀들에게 피해를 이야기하자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대응의 용기를 더할 수 있었다.

아직 사회는 ‘혼자 조용히 해결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성폭력피해자를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만든 침묵을 강요하는 불편한 현실이다.

3. 스토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

1) 현장 실무자의 인식 부재

사례11) ‘둘이 만나서 잘 해결하라’는 현장 실무자

만날 것을 요구하여 거절 의사를 밝히자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괴롭히며 스토킹함.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 해결을 권유하며 “몰래 가지고 있는 영상의 복사본이 있을 경우 유포 등 보복할 수 있으니 일단 가해자랑 둘이 만나서 잘 해결해서 영상을 지우게 해라”라는 부적절한 안내를 받은 상황에서의 불안을 호소함.

사례11)은 스토킹 상황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영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해 적절한 법적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로 사법기관 실무자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협박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법적으로 조치를 받고 협박 수단이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례의 피해자는 신속하게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한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에서는 결국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개인적 해결법'을 안내하였다. 가해자와 둘이 만나서 잘 해결하라는 경찰의 안내는 가해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위험을 피해자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는 스토킹 피해 상황에서 용기를 내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를 위험에 다시 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이미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설득을 하라거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012년¹⁷⁾, 2013년¹⁸⁾ 발의되었던 법안들을 볼 때 각 법안들에서 스토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와 검사, 경찰서장, 판사 등이다. 이들이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 대한 법적 개입과 조치를 위한 해석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위의 사례와 같이 스토킹 피해에 대해 잘 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른 성폭력 피해보다 더욱 '사소하게' 다뤄지는 스토킹에 대한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우려된다.

2) 사법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

사례12)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

육설과 폭행, 성추행과 강간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는 상황. 피해자는 어릴 때 다른 성폭력 피해로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처벌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가족이나 주변에 피해를 알리는 것을 더욱 꺼림.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사법기관의 대처가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폭력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진했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거나 피해를 한 번 신고했으나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법이 자신을 안전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17) 이낙연의원 대표발의(2012.08.27),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8) 김제남의원 대표발의(2013.06.19), 스토킹 방지법안

상황이다. 이미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에서는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법에 호소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3)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피해

사례13) (피해자 50대) 십 수 년 전 헤어진 가해자가 연애탄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내 협박하며 스토킹함. 줄곧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하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문자와 전화를 지속하다가 직장에 찾아옴. 1주일 전 거액의 돈을 가해자가 요구하는 상황에 “내가 죽어야 상황이 끝날 것 같다. TV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졌다”는 절망감을 호소함.

사례14) (피해자 60대)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70대 할아버지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힘.

사례15) (남성피해자) 음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지속적인 만남 요구의 메시지를 담은 문자를 보내는 스토킹을 함.

스토킹이 ‘유명인, 젊은 여성’에게 발생히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집착적 구애 혹은 망상일 것이라는 인식과 다르게 상담분석통계 자료의 파기해자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이는 사이(93%)¹⁹⁾에서 발생한다. 또한 스토킹은 위 사례13), 사례14), 사례15)과 같이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만 국한된 피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사례 13)과 같이 자신이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과 친밀했던 사람에게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것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IV. 스토킹 피해 현실을 통해 본 과제

지난 3년간의 스토킹 피해 상담일지를 분석한 결과,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스토킹 피해 자체뿐 아니라 피해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어려움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에 대해 개인적으로나마 대응을 하다가 어려움을 느껴 상담을 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더라도 스토킹 피해는 쉽사리 중단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제도적 절차까지 밟았던 피해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음에도 스토킹이 중단되지 않아 절망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 스토킹피해 상담통계 부분을 확인해 보면, 240명 중 225명(93%)이 이는 사람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20) 물론, 스토킹피해 상담통계의 피해자 성별을 보면 ‘여성’이 압도적이며 이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스토킹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스토킹은 다른 성폭력 피해와 중복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전화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하고 주변을 배회하거나 찾아오는 등의 행위부터, 상황이 악화됐을 시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감금, 납치,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해의 심각성과 달리, '너를 사랑해서이다, 너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논리와 사회 내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 스톱킹 피해를 개인적인 일로 사소하게 여기는 인식 속에서 스톱킹 피해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또한 스톱킹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구제 할 제도가 미비하고, 스톱킹 피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해자를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뚜렷하지 않은 현실에서 피해자 개인이 대응을 결심하기란 매우 버거운 일이다.

이에 스톱킹 상담일지 분석을 바탕으로 본 현실을 통해 향후 스톱킹 피해를 중단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견지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스톱킹피해 중단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협박과 지속적인 위협 행위는 스톱킹 피해를 겪는 피해자에게 일상의 축소를 경험하게 한다. 이는 반복적인 스톱킹 행위가 피해자의 집과 직장 등 같은 사적인 공간의 일상성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폭력에 피해자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험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스톱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스톱킹 피해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조직되어야 한다. 스톱킹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스톱킹 가해는 경범죄 내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근거로 범칙금 8만원에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경범죄 조항으로 스톱킹 피해를 중단하기에는 현실과 제도의 간극이 너무 크다. 현행법에서 스톱킹 범죄를 가볍게, 개인의 사소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법제도조차 스톱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스톱킹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이에 스톱킹 피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스톱킹이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지며 피해가 장기화되어 악화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개별적인 단회의 가해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스톱킹 자체에 대한 제재 수단과 방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즉 스톱킹 행위를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묶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톱킹 피해 중 개별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 안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톱킹 피해에 대한

합리적 대처 방안이 되기 어렵다.

스토킹은 그 피해가 지속적이며 피해 또한 다양한 수위와 양태로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피해자가 협박의 빌미를 주었다는 자책감, 위협에 의한 불안감으로 개인적인 대응 이외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절된 각개의 행위만을 제재·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 경험을 법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증명력과 스토킹 피해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심각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피해 경험을 포섭할 수 있는 스토킹 법제정이 매우 절실하다.

스토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토킹의 실상과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책적 기본 방침의 수립, 구체적 법 규정 작업이 경험적 조사연구에 근거하여 사실적 기초를 가져야 한다. 법적 개입의 실질적 기준과 정책 방향이 사실적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과 현실 적합성 확보에 필수적이다.²¹⁾

‘경미하다고 불리는 가해 행위부터 ‘충격적’일 정도로 심각한 피해로 가시화되는 가해까지 모두 현재진행형으로,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문제²²⁾이기에 피해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스토킹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고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제정은 스토킹의 배경이 되는 일상화된 폭력적 성규범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토대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피해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실무자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토킹을 사소화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길 경우, 현행법상 가해자를 제재할 수단이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제도가 실효성 있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실무자들의 인식 변화 또한 절실하며 이러한 인식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 장치인 법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반영된 법 제도와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될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스토킹 피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21) 형사정책연구원(2000, 박철현·이상용·진수명),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p.3

22) 성폭력 피해에 경중은 없으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처벌 수위에서의 경중을 이야기하고자 함

1) 스톡킹 피해 대응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을 뒤흔드는 두려움과의 싸움인 스톡킹 피해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스톡킹 피해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톡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가 묵살되는 경험이 축적됨을 뜻하며, '소통이 불가능한(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해 행위가 쌓이면서 피해자의 일상은 스톡킹에 대한 불안으로 잠식되게 된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지하는 것은 한편으로 대응을 위한 시작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 그 순간 '피해에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하면 중단할 수 있다, 이 상황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지지해줄 사회적 기반이 있다면 대응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스톡킹 피해의 실태와 피해 중단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스톡킹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톡킹 피해를 인지하는 것이 곧 대응의 시작이 될 수 있기에 스톡킹 피해를 인지한 것이 곧 대응의 시작이고, 피해는 중단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피해 현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대응의 과정을 보다 많이 드러내고 알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번 상담일지 분석을 보면 가해자가 '죽겠다. 자살하겠다'라는 협박을 스톡킹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실상 '자살 시도 혹은 자해를 실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협박은 피해자의 공포를 자극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며, 가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피해를 예고하고 있는 가해자의 말은 두려움을 '조장'한다. 가해자에 의해 조장된 두려움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되기에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정보, 대응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2) 스톡킹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과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스톡킹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이 절실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스톡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가 피해를 장기화·악화시키고 대응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앞서 피해 사례에서 보았듯이 스톡킹 피해를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피해가 장기화되고, 악화되는 주요한 원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유발론'이 스톡킹의 무기가 되는 현실을 전복시켜야 한다. 이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성문화를 해체하는 것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스톡킹 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스톡킹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스톡킹 관련 법안의 입법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스토킹 피해,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피해자 혼자 힘을 내기란 불가능하다. 스토킹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문화,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V. 나가며

지난 3년간의 스토킹 피해 상담일지 분석 결과 스토킹 피해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피해 자체도 크지만, 피해를 설명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컸다. 개인적 수준에서 대처하다 어려움을 느끼고, 주변의 지인에게 상의하거나 제도적 절차까지 알아보았지만, 또다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고 중단되지 않는 스토킹 현실에 절망하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스토킹은 다른 성폭력 피해와 중복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협박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히거나, 감금 납치 살인미수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수준에 이르기까지 하여 적극적인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스토킹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제도적 방법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뚜렷하게 없기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단순히 극악한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이 반영된 법 제도 마련은 일상화된 폭력적 성규범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대응에 힘을 실어 줄 더 많은 이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두려움을 넘어 설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정책의 적극적 개입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한 축에서 상담소도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한 디딤돌을 놓고자 노력할 것이다.

토론문

스토킹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처벌 법제화의 전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부연구위원

우리 나라의 스톱킹 관련 법률안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도입에 대한 방향 제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홍종희 과장

여성 대상 폭력으로서의 스톱킹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안

여가부 권익정책과, 최혜민 사무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조치의 필요성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은애 과장

스토킹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처벌 법제화의 전략

김 한 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스톱킹 범죄화의 난제

1-1. 스톱킹 가해방법 및 수단은 통신 및 사이버상 괴롭힘이 가장 많고, 불시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주거지역주변을 배회하는 피해가 그 다음으로 많음. 멀리서 쳐다본다거나 현금을 이체하는 등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다수임.

1-2. 현행법은 스톱킹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여타 성폭력 가해나 피해보다 경미하거나 개인의 사소한 문제로 전제하고 있음.

1-3. 사법기관의 성폭력(스토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간 스톱킹 관련 법안들은 스톱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를 사법경찰관리와 검사로 하고 있음.

2 스톱킹 법제화의 필요성

2-1.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톱킹 가해와 피해는 현행 경범죄 처벌로 규율될 수 없고, 개별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성폭력처벌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 스톱킹 가해행위 규제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제화가 절실함.

2-2. 해외 스톱킹 입법화과정을 볼 때 스톱킹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고조되었을 때 법제화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다만, 사건 이슈화될 때마다 속성으로 강경 처벌정책을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하여 언론에 유포하는 정부대처는 적절한 현실적 대응책이 되지 못함.

2-3. 경미한 가해행위로부터 심각한 피해로 가시화되는 가해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 지속적 형태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피해경험과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법적개입의 실질적 기준을 정립해야 함.

3. 기존 스토킹 관련법안의 분석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1999)	스토킹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2012)	스토킹방지법안(2013)
스토킹의 정의	○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다음의 행위 - <u>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u> -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 전화, 편지, 컴퓨터 통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 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큼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u>정당한 이유 없는 다음의 행위</u> -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 전화, 편지, 컴퓨터 통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 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 <u>그 밖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u> ○ <u>피해자란 스토킹의 직접적 대상자로서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u>
피해자 보호		○ 피해자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u>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u> -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 법적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피해자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u>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u> -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p>-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u>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인도</u></p> <p>○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관할 경찰서장에게 <u>신변안전조치</u>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 신고자는 판사, 검사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인도</p> <p>○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 일정기간 <u>특정시설 보호</u> - 일정기간 <u>신변경호</u> -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 <u>귀가 시 동행</u> - 대상자 주거에 대한 <u>주거적순찰</u> -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p> <p>○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 신고자는 판사, 검사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가해자 규제</p>	<p>○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 판사는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p> <p>-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p>	<p>○ 검사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u>임시조치</u>를 청구할 수 있다.</p> <p>○ 검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관할</p>	<p>○ 검사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p> <p>○ 검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관할</p>

	<p>내의 접근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행위자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p>○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금지명령 - 사회봉사명령 - 상담수강명령 	<p>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p> <p>○ 법원은 스토킹 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p> <p>○ 판사는 스토킹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u>접근금지(2개월, 2회연장)</u> - 피해자에 대한 <u>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2개월, 2회연장)</u> - 행위자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u>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1개월, 1회연장)</u> - 경찰관서의 <u>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1개월, 1회연장)</u> <p>○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처분(6개월, 1회연장)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보호관찰 - 사회봉사, 수강명령 (100시간) - <u>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 상담위탁</u> - 의료기관 치료위탁 	<p>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p> <p>○ 판사는 스토킹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2개월, 2회연장)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2개월, 2회연장) - 행위자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1개월, 1회연장) -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1개월, 1회연장) <p>○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처분(6개월, 1회연장)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보호관찰 - 사회봉사, 수강명령 (100시간) - 의료기관 치료위탁
<p>가해자 처벌</p>	<p>○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여</p>	<p>○ 스토킹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p>	<p>○ 스토킹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p>

	<p>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편지, 전화, 컴퓨터통신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을 전달하여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자는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벌금에 처한다.</p> <p>○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u>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 청소년을 상대로 스토킹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반의사불벌</p>	<p>벌금에 처한다.</p> <p>○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반의사불벌</p>
<p>피해자 지원</p>		<p>○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u>스토킹피해자 지원 법인</u>을 설립할 수 있다.</p>	<p>○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u>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u>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3.1. 2012년과 2013년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내용²³⁾에 따르면, 스토킹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등 현행 법률로도 대응은 가능하지만,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스토킹의 외관만을 포착한 것이며 본질적인 측면의 규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집·학교·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진로를 막아서서 교제하지는 등 특정한 요구를 반복하는 행위는 현행 경범죄처벌법 위반²⁴⁾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일련의 스토킹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가져오는 프라이머시나 행동의 자유 침해 및 정신적 고통과 같은 스토킹의 고유한 법익침해 행태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23)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3.2.); 스토킹 방지법안 검토보고 (2013.12)

24)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2 스토킹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및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과 관련해서는,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스토킹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려면 스토킹피해자의 현황과 실태, 지원 필요성 및 관련 예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행·추진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보호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의 입장이다.²⁵⁾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²⁶⁾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상 2012년 성폭력 상담은 1,321건이며 그 중 스토킹 관련 상담은 50건(3.8%)이며, 법무부 및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성폭력 범죄 건수는 22,034건이므로²⁷⁾, 총 성폭력 범죄 건수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스토킹 관련 상담 비율을 적용하면 스토킹 피해자 수는 연간 837명으로 추정된다(22,034명 × 3.8%). 그런데 전국에 설치된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시설은 총 274개소에 달하므로²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추정한 스토킹 피해자 수를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시설의 수로 나누면,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시설 1개소당 지원하여야 하는 스토킹 피해자 수는 연 평균 약 3명이다(837명 / 274개소). 따라서 별도의 인력 충원 및 업무공간 추가 확보 없이 현재의 지원시설 인력

25)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스토킹 방지법안 검토보고 (2013.12)

26) 국회예산정책처, 스토킹방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스토킹방지법안. 의안번호 1905532. 2013.6.19.)

27) 성폭력 범죄 현황 (2011년 기준. 자료: 대검찰청, 경찰청)

구분	건수
아동(13세미만)	1,054
청소년(13세이상 19세미만)	3,162
성인(19세이상)	17,324
장애인	494
합 계	22,034

28)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시설 현황 (2012년 기준.자료: 여성가족부, 법무부)

구분	개소
성폭력상담소	16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1
해바라기 아동센터(성폭력)	9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성폭력)	6
원스톱지원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1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
합 계	274

및 건물을 활용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 제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3.3. 2012년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01321)은 법제사법위원회²⁹⁾에 상정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며, 2013년 스토킹 방지법안 (의안번호 1905532) 역시 법제사법위원회³⁰⁾에 상정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 모두 소관위에 상정되고 전문위원보고 외에는 아무런 논의 없이 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살피건대, 스토킹 범죄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1999→2012→2013년 법안의 내용이 스토킹 피해경험과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스토킹의 다양한 행위양태를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포괄적 범죄화 규정(“그 밖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도 두었고, 가해자의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규정하였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가해자 처벌에 관하여는, 스토킹 행위, 보호처분 불이행행위, 가중적 스토킹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범죄 관련특별법과 비교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형량을 법정하였다. 현행 형사법이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예방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따라서 스토킹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입법정책적으로 합의된 단계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 문제는 스토킹 특별법제의 또다른 중요한 구성부분인 스토킹 피해자보호 및 지원이다.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시설’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2, 2013년 법안상 제안된 스토킹 피해자지원법인 내지 피해자지원시설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성폭력범죄의 일부이면서도 특별한 형태의 성폭력인 스토킹 피해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 의심된다.³¹⁾

또한 현재 추세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기관과 시설이 아동대상/장애인대상/아동장애인대상/친족간성폭력 등 세분화 구축되고 있는바, 이는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망을 두터이 하는 취지라는 점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29)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3.2.19.

30)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3.12.13.

31)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스토킹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 스토킹행위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법론으로는 스토킹을 전담하는 기관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호·황지태,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2002, 144면)

3.5. 가장 현실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다. 입법적 필요성과 처벌내용에 대하여 일정정도 합의가 진전된 현실배경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 법제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동력을 상실하는가? 실제 입법에 이르기까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4. 외국에서 스토킹 법제 현실화의 계기

4.1. 미국 스토킹 방지법은 1989년 여배우 Rebecca Schaeffer가 스토키에게 살해된 사건이 계기였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스토킹에 의해 4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사회의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1990년 캘리포니아주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었다. 1992년 부터는 다른 주들에서도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3년까지 모든 주에서 스토킹 방지법을 도입했으며, 1995년에는 스토킹방지관련 연방법이 제정되었다.³²⁾

4.2. 호주의 스토킹 방지법도 과거 친구관계였던 남자에게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의 적극적 호응속에 제정되었다. 미국 스토킹 방지법을 모델로 하여 1993년 퀸스랜드 주를 시작으로 1995년까지 모든 주에 도입되었다.³³⁾

4.3. 영국에서는 그 자신이 17년간에 걸친 스토킹 피해자 가족이었던 Evonne Von Heussen이 스토킹방지법 제정여론을 이끌었다. 1993년 전국 스토킹 및 괴롭힘 방지운동연합(National Anti-Stalking and Harassment Support Association)을 설립하고, 전국적인 캠페인(National Anti-Stalking and Harassment campaign)을 추진했다. 또한 안전관련 민간단체 Suzy Lamplugh Trust도 스토킹 피해자 Tracy Morgan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1996년 스토킹 법안(Stalking Bill)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입법에 실패하고, 그 직후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이 스토킹 백서를 통해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재검토한 연후에, 1997년 스토킹 관련내용이 포함된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이 제정되었다.³⁴⁾

4.4. 스토킹 피해가 살인에 이를 정도까지 되어야 스토킹 관련법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극적 사건은 하나의 계기가 될 뿐, 실제 법안이 상정되고 법제정

32) 이진호·황지태,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98-99,103면

33) 이진호·황지태,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109면

34) 1997년법 제1A조와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괴롭힘(harassment)범죄 둘 이상의 사람이 상대방의 정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또는 정당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할 행위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체계적 입법운동을 통해 여론을 조직하되, 현실 입법과정에서는 스토킹 피해현실이 법내용에 전략적으로 반영되도록 시민사회·행정부(형사사법기관)-의회(정당)의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5. 사례 : 영국의 1996년 스토킹법안 및 1997년 괴롭힘방지법의 제정과정과 평가

5.1. 영국의 1996년 스토킹법안(Stalking Bill)은 최초로 스토킹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였다. 이 법안은 캠페인을 주도한 민간단체들이 전국경찰청장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와 경찰연맹(Police Federation)의 지원을 받아 입법로비한 결과다. 노동당 하원의원 Janet Anderson이 의원 64명과 함께 제출한 법안은 법적 구성요건에 대한 보수당 정부의 유보적 태도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1997년 괴롭힘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스토킹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2012년 개정 괴롭힘방지법에 명시적으로 스토킹 범죄와 폭력에 대한 심각한 공포나 고통을 유발하는 스토킹범죄(stalking involving fear of violence or serious alarm or distress)가 규정되었다.³⁵⁾

5.2. 1996년 스토킹법안은 여아가 입법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안으로 하원 법안심사 최종단계까지 갔다. 법률적 쟁점은 금지명령의 도입여부(prohibition orders)였다. 입법될 경우 치안관사는 스토킹 행위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된다. 내무성 주무장관은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점(정치인을 추적하는 기자의 행동조차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무성 차원에서 현행법과 새로운 법의 도입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 1996년 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되었지만, 초안과정에서 내무성 주무장관과 법제담당관, 법무성 장관, 경찰청,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쳤다. 법안 통과단계에서 내무성의 유보적 태도에 대하여는 민간단체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었다. ³⁶⁾

5.3. Evonne Von Heussen은 당시 십대였던 자신의 딸이 칼을 소지한 남자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경찰, 변호사,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자, 외국의 스토킹법제를 연구하면서 스스로 구조전화를 개설했다. 수 만건의 구조전화내용을 각 해당 지역구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93년부터 전

35) 201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1997년법에 흡결된 스토킹관련조항은 2012년 정보보호법(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 제111조 제2항에 의해 보완하였다. 즉 1997년법에 신설된 제2A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51주 이하의 구금형, 제4A조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심각한 공포나 고통을 주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구금형을 규정하였다.

36) The Independent, 1996년 5월 7일자

국 스토킹 및 괴롭힘 방지운동연합을 조직하고 수 년간의 전국적인 캠페인 노력 끝에 당시 보수당정부 내무성을 설득해 스토킹 문제를 정부주요 정책의제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폰 호이센은 1997년 직접 괴롭힘방지 법안 초안을 만들어, 내무성과 법무성 관계자들과 협의했고 정부제출 최종법안이 하원에 상정했다. 폰 호이센은 하원 법안심사소위에도 참석했다. 법안이 최종공포된 후에는 내무성, 법무성과 협력하여 법관과 변호사, 경찰, 자원기관들에게 스토킹 및 괴롭힘에 대한 교육훈련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 스토킹과 괴롭힘 관련 재판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³⁷⁾

5.4. 1997년법의 제정과정과 이후 개정과정에서 찬반논의의 대립은 있었다. 정치적 찬반의견의 대립 때문에 서둘러 통과된 측면도 있다. 법규정의 광범위성과 불명확성, 방해 내지 괴롭힘의 행위에 대하여 최고 5년 구금형의 중벌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은 동법이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7조 죄형법정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 2012년 의회에 설치된 스토킹법개정을 위한 조사위원회 (Independent Parliamentary Inquiry into reform of stalking law)는 1997년법이 기념비적인 입법으로서 스토킹이나 괴롭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근래 가장 융통성 있는 입법으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불명확한 범죄요건 규정으로써 인권침해적 법률이라는 비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³⁸⁾

5.5. 1997년법의 본래 목적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있었으나, 이후 개정과정에서 동물실험기업, 반-환경기업, 군사시설에 대한 정당한 시위행위를 막기 위하여 접근금지명령이 남용되기 시작했다.³⁹⁾ 이로써 괴롭힘방지법은 시위참가자들을 형사처벌하며, 형사증거법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해 접근금지명령을 쉽게 부여하게 됨으로써 형사범죄와 민사제재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인권운동단체들은 이처럼 거대기업이 집회시위권리를 제한하는데 1997년법을 남용하는 경향에 대하여 위험스럽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한다. 여성운동가들 역시 이러한 경향을 법적 하이재킹(legal hijacking)이라고 비난한다. 여성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집회시위권리를 제한하는 용도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⁴⁰⁾

37) The Independent, 1996년 5월 7일자

38) The guardian, 2009년 11월 4일자

39) 사실상 1996년 스토킹법안 상원심의과정에서는 동물실험기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필요성을 근거로 스토킹법안을 지지했다. (Hansard: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Bill HL Deb 14 March 2005 vol 670 cc1077-93)

6. 입법전략상 검토사항

스토킹 가해자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입법 목표와 수단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기존 유사법률의 내용을 답습하고, 법안비용추계를 간과하는 태도에는 법제화를 실현할 진정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당연 현실적 동력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강간살인부터 공중 밀집 장소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이르는 광범위한 성폭력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스톱킹 범죄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일부 조항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 특별법체계의 특성상 형벌상향의 가능성, 그리고 신상공개나 전자발찌제도의 확대가능성의 우려가 있다. 아직 형사범죄로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성희롱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죄형법정원칙상 위헌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가해자 대상 보호관찰이나 치료처우에서도 기존 성폭력범죄자와 스톱킹 가해자를 구별한 처분 내지 처우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기존 스톱킹 법안들은 스톱킹 범죄특성상 처벌보다는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에 중점을 두고,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모델에 따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독립된 스톱킹범죄처벌특례법이 타당한 법제화방식이다. 다만 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긴급개입과 절차적 보호수단의 현실성에 대하여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중 보호시설 인도조치는 스톱킹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지원시설을 대체할 자원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관점사와 경찰서장의 경찰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요청은 일정기간 특정시설보호, 신변경호, 증인보호, 주기적 순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자원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 검토사항이다. 그리고 판사가 명하는 임시조치 내용은 최장 6개월간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통신상 접근금지, 그리고 최장 2개월의 가해자 치료 또는 구치에 불과하다. 판사가 명할 수 있는 보호처분 역시 최장 1년의 접근제한조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위탁에 불과하다. 그 실행에 필요한 자원은 물론, 스톱킹 피해현실에 비추어 당해 조치들의 현실적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제화의 우선순위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톱킹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법과 차별된 스

40) The guardian, 2009년 11월 4일자

토킹피해자보호지원특별법도 개별입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스톱킹 피해자가 “성폭력” 방지및피해자보호법상 보호지원기관이 대상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톱킹 피해는 신체적 폭력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스톱킹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는 심리치료, 신변보호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위주의 보호지원과 구별되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스톱킹 가해자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피해자(생존자)관점의 입법운동을 조직화하고, 지속적 캠페인을 수행할 중심이 있어야 한다. 법안 초안마련과정, 국회 법제과정에 구체적 자료와 대안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하며, 법무부, 검찰, 경찰, 여성가족부와 각 정당, 각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과의 협력적 연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법제정 이후에도 법시행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스토킹 관련 법률안

이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들어가며

-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외국 의 입법사례⁴¹⁾도 충분히 존재함

41) 미국의 각 주의 스토킹방지법(캘리포니아주가 1990년 최초로 제정)은 스토킹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① 스토킹에 대한 전형적인 정의는 고의성·악의성·반복성을 갖는 따라다니기 및 괴롭히기임. 스토킹을 판단함에 있어 많은 주에서는 특정한 행동패턴을 요구 하고 있고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상당한 공포를 느낄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② 그러나 이러한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여부, 집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사전연락 없이 만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감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의 행위유형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름. ③ 스토킹의 핵심요소에 대하여 스토킹방지법 모델법전에서는 “시각적이거나 신체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주에서는 단순히 “따라다니기”(following)라고 표현하고 있음(몇몇 주는 경죄로, 과반이 넘는 주들은 중죄로 처벌).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의 스토킹방지법은 대부분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한 행위유형이란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 피해자의 집 근처나 자주 출입하는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것, 피해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물건을 놓아두거나 보내는 것,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 피해자에게 공포를 일으킬 만한 방법으로 행위하는 것 등을 말함. 대부분의 주에서는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2회 이상 행해진 경우에만 스토킹방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많은 주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힐 의도 또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의도를 스토킹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영국의 ‘괴롭힘방지법’(1997년 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유형은 ① 괴롭히기 ②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임. ‘괴롭히기’가 무엇인지는 특별히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경죄로서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란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최소한 2회 이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각 경우에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타인이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로 정의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일본의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의 규제대상은 ‘따라다니기 등’과 ‘스토커행위 등’ 두 행위유형임. ‘따라다니기 등’이란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기타 호의의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당해 특정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 혹은 동거친족 기타 당해 특정인과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막아서기, 주거·근무처·학교 기타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또는 주거등에 들이닥치는 것 ②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케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③ 면회, 교제 기타 의무없는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 ④ 저히 거

-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7차례나 특별법안의 발의되었으며, 현재 2개 법안이 계류 중임

2 우리나라의 스토킹 관련 법률안

(1)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법률안

순번	제안일자	의안명	제안자	결과
1	1999.5.24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김병태 의원 등 13인	임기만으로 폐기
2	2003.10.13	스토킹 방지법안	이강래 의원 등 15인	임기만으로 폐기
3	2005.9.27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염동연 의원 등 25인	철회
4	2005.11.28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염동연 의원 외 21인	임기만으로 폐기
5	2009.1.9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김재균 의원 등 10인	임기만으로 폐기
6	2012.8.27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낙연 의원 등 10인	계류 중
7	2013.6.19	스토킹 방지법안	김제남 의원 등 10인	계류 중

절고 품위 없거나 난폭한 언동을 행하는 것 ⑤ 전화를 걸어 아무말도 하지 않거나 또는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 ⑥ 오물, 동물의 사체 기타 혐오의 정을 느끼게 하는 물건을 송부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⑦ 명예를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또는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등 8개의 행위유형을 지칭함. ‘스토킹행위 등’이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니기 등(위 ①②③④에서 열거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명예가 침해되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한함)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함(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김용욱,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연세법학연구』 제16호, 연세법학회, 2004년 2월 참조. 독일의 형법 제238조(2007년 발효)에 따르면 ①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근처로 접근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삼자를 통하여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③ 다른 사람의 개인 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 서비스 신청, 제삼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위, ④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⑤ 이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등을 집요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는 행위 등이 규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됨. 스토킹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건강침해의 위험이 실제로 야기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함(가속 등의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피해자 사망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 제94호(2013년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조

(2) 기존 법률안의 내용 및 쟁점 분석

가) 1999년 법률안

	법률안의 내용
스토킹의 정의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족에 대한 행위도 포함)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사건 처리 규정을 둠(제2장) • 보호처분의 종류(제29조): 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상담·수감명령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임시조치(제20조) - 접근금지, 편지·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등에 유치

○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음
-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선물을 전달하거나 무작정 기다리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 있음
- 보호사건으로 처리시 인력, 예산이 과다소요 되는 문제 있음.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
- '스토킹'이라는 외국어 표현의 문제점

○ 여성특별위원회 의견서

- 입법취지에는 의견을 같이 하나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입법형태 및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함

나) 2003년 법률안

	법률안의 내용
스토킹의 정의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싫어함에도 <u>정당한 사유 없이</u> 특정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추적하는 것 2.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 3. 특정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지명령 이후에도 다시 스토킹을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기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의 경고 규정을 둠(제3조)⁴²⁾ • 금지명령 규정을 둠(제5조): 접근금지, 편지·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에서의 위탁, 유치장 등에 유치⁴³⁾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 처벌은 친고죄(제20조 제2항)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없음

다) 2005년 법률안⁴⁴⁾

	법률안의 내용
스토킹의 정의	<p>지속적 괴롭힘 행위(이하 “스토킹”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도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동거친족 또는 특정인과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게 불안, 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p> <p>1.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함에도 2회 이상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p>

42) 제3조(사법경찰관의 경고)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피해자의 가족·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스토킹을 한 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과 이를 위반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고를 받은 행위자가 스토킹을 계속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 등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피해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피해자등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없다.

43) 1999년 법안의 임시조치 내용과 동일함. 다만, 1999년 법안에서는 보호사건의 진행 중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3년 법안에서는 보호사건과 관계없이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44) 2005. 9. 27.자로 발의한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은 철회하고 2005. 11. 29.자로 다시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2005. 11. 29.자 법안을 위주로 살펴봄

	<p>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글이나 사진, 그림 또는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2회 이상 보내거나 전송하는 행위</p> <p>3. 상대방이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목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이나 표현을 2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p> <p>4.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거나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화 걸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막아서기, 주거·근무처·학교 등 상대방이 통상 소재하는 장소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p>
처벌	<p>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p> <p>청소년 상대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p> <p>흥기 등 휴대사: 1년 이상의 유기징역</p>
기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피해센터 규정을 둠(제22조): 경찰청 산하에 설치, 전담경찰관, 심리상담사 배치 • 경찰의 제지 및 경고 권한 뿐 아니라 행위자 격리,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 등 권한까지 규정(제4조) • 신변안전조치 규정(제5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금지명령 등 임시조치(제7조): 접근금지명령, 재발방지교육 참여명령, 의료기관 등의 위탁처분, 유치처분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법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임
- 법원은 일본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 기술적으로 스토킹과 협박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 ①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느낄 것으로 판단되는 불안의 정도, ② 행위의 목적 내지 고의의 내용, ③ 행위의 방법 등으로 구분하면서, 스토킹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현저한 불안'을 유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신체의 안전이나 명예, 정조, 행동의 자유 등에 대한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닌 행위, ②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가해의사가 없어야 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일방적인 연애감정 또는 호기심의 충족, 그에 대한 거절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 ③ 반복되는 전화걸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여,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협박죄와 구별하고,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처하며, 일시적 또는 단순한 장난에서 비롯된 행위를 범죄나 제재처분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안 제2조제3호의 취지와 “묵시적인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문 표현에 의하면 스토킹은 “묵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결과가 되므로 법문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 및 경찰청도 “2회 이상”이라는 요건은 비례의 원칙 및 기본권 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
- 특정인과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의 개념 및 범위가 막연, 법무부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
- 경찰청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변안전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조치라고 지적함

라) 2009년 법률안

	법률안의 내용
스토킹의 정의	<p>“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p> <p>-> 공포나 두려움을 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p>
처벌	<p>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흥기 등 휴대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p>
기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의 응급조치(스토킹 중단 요구, 보호시설 인도) 규정을 둠 • 스토킹 신고자가 보복당할 우려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 규정 • 임시조치 규정을 둠(제5조, 제8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등에 유치 • 보호사건 처리 규정 둠 <p>-> 보호처분의 종류: 접근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p>

	-> 보호처분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 규정을 둠 • 스토킹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제17조 제5항)
--	---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공감
- 법 제정 초기 단계에서는 스토킹의 행위유형을 가급적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향후 법익침해 가능성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정 행위유형을 스토킹에 추가시켜 개정할 것을 제안
- 보호처분 불이행죄와 가중적 스토킹죄는 반의사불벌죄, 단순 스토킹은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2012년 법률안(계류중) ※ 2009년 법안 내용과 거의 동일함

	법률안의 내용
스토킹의 정의	<p>“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u>정당한 이유 없이</u>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p> <p>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p> <p>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p> <p>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p> <p>마. <u>스토킹으로 인하여</u>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p>
처벌	<p>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p> <p>청소년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p> <p>흉기 등 휴대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p>
기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의 응급조치(스토킹 중단 요구, 보호시설 인도) 규정을 둠 • 스토킹 신고자가 보복당할 우려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 규정 • 임시조치 규정을 둠(제5조, 제8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등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사건 처리 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처분의 종류: 접근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 보호처분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 규정을 둠 • 스토킹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제17조 제5항)
--	--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을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도 라목으로 추가할 것 제안
- 법무부는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 반대의견
- 폭행죄나 협박죄 등에서는 청소년 대상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하지 않으며, 흉기 휴대 스토킹이 형법상 특수폭행죄 보다 중한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바) 2013년 법률안

	법률안의 내용
스토킹의 정의	<p>“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u>정당한 이유 없이</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p> <p>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p> <p>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p> <p>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p> <p>마. <u>그 밖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u></p> <p>-> 마목을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두려움을 야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p>
처벌	<p>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p> <p>흉기 등 휴대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p>
기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의 응급조치(스토킹 중단 요구, 보호시설 인도) 규정을 둠 • 스토킹 신고자가 보복당할 우려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열거: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증인 등 출석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조치 규정을 둠: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등에 유치 • 보호사건 처리 규정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처분의 종류: 접근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 보호처분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 규정을 둠 • 스토킹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제17조 제5항)
--	--

3. 스토킹 규제(처벌) 법률 제정과 관련된 쟁점

- 스토킹 행위의 정의, 구성요건
- 처벌 수준 및 가중처벌 사유(청소년 대상, 흉기 휴대 행위)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4. 나가며

- 스토킹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스토킹처벌법’ 도입에 대한 방향 제시

홍중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1. 들어가며

스토킹(stalking)이라는 단어가 국내에 일반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유명 연예인의 일부 열성 팬들의 도를 넘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명인에 대한 스토킹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고, 그 해악의 정도도 강해져 최근에는 스토커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적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⁴⁵⁾.

특히 스토킹 범죄는 발제자의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이 향후 강간 등 성범죄나 기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스토킹의 가해자는 주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 여성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형사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스토킹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의 도입에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가의 형벌권 발동은 최후의 보루이며, 1인의 억울한 피고인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형법의 대원칙상, 처벌법규 제정에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스토킹은 해당 범죄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 이를 고려한 맞춤형 입법이 있어야 한다.

토론자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한층 두텁게 하고, 법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가지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2 스토킹 범죄 개념의 명확화

45)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을 경범죄처벌법의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범칙금 부과처분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개정도 최근에 이루어져 2013. 3. 22.에서야 해당규정이 시행되었다.

스토킹은 그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영어 단어 'stalk'에는 '몰래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스토킹의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처벌법규를 만들 경우 스토킹에 대응하는 우리말 죄명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발제자의 발표 내용만 보더라도 스토킹으로 분류된 상담내용의 가해 수단이 소문 유포, 사진유포, 폭력, 불시 침입, 배회, 전화, 문자 등 다양하며 피해자 주변에 가만히 서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행위 태양을 아우르는 구성요건을 법률에 담아내는 작업이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가장 큰 과제이다. 형사 처벌을 담아내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반은 헌법에 위배되어 법률의 효력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해 보았다. 독일은 형법에 스토킹죄에 해당하는 조문이 하나 신설되어 2007. 3. 31.부터 시행되었다. 독일에서도 스토킹 개념의 포괄성을 극복하고 법률에 구성요건으로 담아내기 위하여 고민을 많이 하였으며, 결국 해당 법조항 본문에 스토킹 범죄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건을 규정하고 단서에 행위태양을 나타내는 예시적 규정을 5호에 걸쳐 유형화시키는 방식으로 법률을 완성하였다⁴⁶⁾. 일본의 경우 2000. 5. 19.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위 법에서는 정의 규정에 별도로 스토킹의 행위를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따로 두었는데, 스토킹 행위를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해 놓았다⁴⁷⁾.

이러한 입법례들은 스토킹 범죄가 가지는 공통적인 영역을 구성요건으로 설정하면서도 결국 다양한 행위태양을 예시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명확성 원칙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시도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입법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가 가지는 공통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에 포함될만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반복적인 행위' 정도가 스토킹 범죄의 공통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가해자의 반복적인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본다면 장소적 접근, 우편·전화·문자메세지·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접근, 다수가 볼 수 있게 특정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피해자 주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남겨 놓는 행위,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무단으로 대신하는 행위, 녹음·사진 촬영·동영상 촬영 등 몰래 피해자의 사생활을 기록하거나 직접적으로 감시하는 행위 등을 꼽을 수 있겠다⁴⁸⁾. 보충적 규정을 두어 이에 준하는 행위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46) 독일 형법 제238조 제1항

47) 일본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범주가 점차 형성되어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고한 입법을 위해 스토킹 피해사례에 대한 수집과 연구,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형사처벌의 적정화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처벌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처벌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스토킹처벌법의 형사정책적 효과를 얻기 힘들고, 처벌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다른 범죄의 처벌 수준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행위태양 중 일부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⁴⁸⁾,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균형있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의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으로 인한 해악이 표현 형태만 다를 뿐 피해자에게 협박의 해악 고지와 비슷한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다⁵⁰⁾.

집단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하는 행위, 상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행위,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가중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4.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48) 구체적 행위태양은 앞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 내용을 더욱 확장하고 이를 몇가지 유형으로 일반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49) 실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게 징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스토킹 처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할 경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측면이다. 스토킹은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와 더 이상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스토킹범죄가 성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의 집착이 형사처벌로 인하여 보복감정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접수될 경우, 피의자가 체포,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임시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한 접근 금지, 필요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조치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에의 위탁,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출석 시 동행조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가 수사 절차부터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으면서 법률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문을 준용하는 형태로 하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형사처벌과 함께 보호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스토킹 가해자의 집착적 성향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조치를 병과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격리를 시켜놓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절차, 재판절차, 형 집행 등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해주는 내용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조되어 마땅하다. 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단체들의 지속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5. 마치며

스토킹 범죄의 형사 처벌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강조되었으며,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스토킹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범 방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도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아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명확한 규정과 처벌수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입법에 녹여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법을 훌륭히 만든다고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니며, 법에 따른 제도가 잘 정비되고, 관계 기관 및 단체들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에서도 그 한축을 담당하는 기관이자,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법률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여성 대상 폭력으로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안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11년부터 '13년까지 스토킹 상담 일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스토킹이 단순히 개인 간에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의 왜곡된 성별권력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조적 범죄임이 드러난다.

상담 일지에 의하면 가해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95.4%)이며, 피해자의 성별은 대부분 여성(97.5%)이다. 그리고 이는 사람에게 의해 스토킹을 당하는 비율이 93.8%이며, 그중 데이트 관계에 있는 혹은 있었던 사람이 56.7%에 달한다. 성별권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 속에서 지배자로서의 남성은 피지배자로서의 여성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객체화하고, 심한 경우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잘못된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일견 평등해 보이는 데이트 관계도 이러한 성별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자신의 뜻대로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게 분노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의사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스토킹을 저지르는 것이다.

스토킹이 성별권력관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상담 일지에서 스토킹 피해 외에 성폭력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한 건수가 전체의 33.8%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역시 많은 경우 성별권력관계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여성에게 스토킹이라는 폭력을 가하는 남성이 그 여성에게 성폭력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상대의 공간을 침해하느냐, 몸을 침해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스토킹과 성폭력은 모두 사회적 강자(혹은 스스로 강자라고 인식하는 자)가 약자에게 정신적·물리적으로 가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토킹 역시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의 법제화는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피해자를 가해

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구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스토킹에 관한 별도법률을 제정해 스토킹을 제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스토킹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이낙연, 2012년 8월 발의)과 스토킹 방지법(김제남, 2013년 6월 발의)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경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지만 이 법안들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스토킹을 한 자에게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구형할 수 있고, 판사가 피해자 접근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흉기 휴대 스토킹법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처벌조항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세부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기 발의된 의원입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 제재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에 규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인(이낙연 의원안)’이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김제남 의원안)’을 별도의 지원체제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법무부의 스미일센터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범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식이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식과 크게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대 및 내실화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 등 현장 종사자와의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스토킹 관련 법제화가 스토킹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발제자가 지적하였듯이 단순 법제화만 이루어진다면 실제 현장에서의 스토킹 범죄사건 처리 방식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등 관련 종사자가 스토킹을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사건이 아닌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도록 종사자 대상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 일반에는 스토킹 역시 근절해야 할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행사에 스토킹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기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 관련부처로서 스토킹 관련법안의 법제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스토킹을 포함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확산해나가고자 한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스토킹 범죄의 실태 및 심각성, 그리고 스토킹 범죄 방지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조치의 필요성

이은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발제문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사회적 인식의 제고 필요성을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발제문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입법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번번이 폐기되었고, 아직까지 스토킹은 기껏해야 경범죄처벌법상의 통고처분 대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다시금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여론에 떠밀려 가해자에 대한 강경 처벌만을 앞세운 법제화는 형사정책의 합리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토킹은 공포를 먹고 진화하는 범죄

발제문의 스토킹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스토킹은 대부분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익 침해의 형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화나 문자, 사이버 스토킹에서 시작하여 협박, 폭행, 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경우이다.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현재 처벌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단계 “지속적인 미행, 추적, 감시, 의사전달”⁵¹⁾에 집중되고 있다.

발제문이 인용한 15개의 사례 중, 현재의 형법 및 기타 특별법으로 처벌되기 어려운 사례는 4가지이다. 사례 1의 꽃과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례 4이나 12처럼 협박을

51) 2013년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2012년 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한 스토킹 규제 법률안에는 처벌 가능한 행위를 지속적 미행, 감시, 사진·그림·문자 전송, 그 밖에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김제남 의원 발의안은 2년 이하의 징역, 이낙연 의원의 발의안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반하지 않은 채 전화를 하거나 의사전달을 하는 경우, 사례 5처럼 집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경우이다. 이 사례들을 현재 발의된 법안의 내용처럼 징역 2년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범죄로 인정, 수사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수사 지속기간 동안 체포 및 구속을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범죄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부작용까지 예상된다. 게다가 위와 같은 스토킹 사례의 경우, 행위 태양의 특성상 그 입증에 어려워 현실에서 어느 정도 까지 처벌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초기단계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필요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후적 처벌 위주의 정책은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적 개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단계에서 경찰의 개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제문에서도 나타났듯이 피해자들이 사법기관을 불신하게 되는 계기는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을 때”이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긴다 해도,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신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줄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될 것이다.

지속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스토킹 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찰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양한 스토킹 형태에 따라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체류금지 명령,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접근 금지 명령 등 위험 방지 차원에서의 경찰행정 작용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현장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경찰행정작용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신속한 경찰 작용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임시조치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보통 7-8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이 보복성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다 신속한 경찰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2012년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앞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은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그 체포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스토킹 범행의 저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의 근거법률이 매우 절실한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지속적인 전화 걸기 등 8가지의 스토킹 행위의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반복의 우려, 피해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경찰행정청은 경고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안위원회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진화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가능한 스토킹 규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경찰행정작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작용법에서 경찰권을 방대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의 범죄가 의심되었을 때 독일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고,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며, 퇴거 명령 및 출입과 체류금지 명령,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퇴거명령과 귀가금지 명령이 가능하며, 스토킹에게 가해진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의 주거나 주변으로부터 격리구금까지 가능하다.

벌칙금 8만원으로도 형벌로도 해결할 수 없다.

스토킹 행위는 그 처벌만큼이나 가해행위의 중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가 경범죄처벌법상의 8만원 벌칙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그 형벌이 중해진다고 해도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는 해결 될 수 없다.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스토킹은 '경미하다고 불리는 가해행위부터 '충격적'이라고 여겨지는 심각한 피해까지 모두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 초기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스토킹을 인지한 피해자가 처음 접하는 경찰에게 책임 있는 보호를 기대한다면, 그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행정조치를 인정함으로써 경찰권 남용을 초래한다거나,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취해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행정조치는 수사 및 재판에서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적용되는 영장주의와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임시조

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성질을 경찰행정작용이 아닌 형사소송절차로 오해한 결과로 보인다. 현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할 피해자 보호조치는 순수한 경찰행정작용일 뿐 검사의 역할인 수사 및 기소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스토킹 관련 법안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발행일 | 2014년 4월 16일
발행인 | 백미순 · 이임혜경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주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2층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 3층
사무전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2890~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 739-8858
상담전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 335-1858
이메일 | 한국성폭력상담소 ksvrc@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fc@womenlink.or.kr
홈페이지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